

의안 번호	1818	[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 심사보고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10. 1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10. 1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10. 13.(수)

2. 제안설명 요지(기획예산실장 김영환)

가. 제안이유

-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 이내로 변경하고,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본어식 표현 등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처분 이의신청 기간 변경(안 제19조)
 - 현행 :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
 - 변경 :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

다. 근거법규

-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미경)

-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거법규
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

제35조(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)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(起算)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칙 <제14839호, 2017. 7. 26.> (정부조직법)

제1조(시행일)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